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37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3793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1001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2. B

3.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4. C

5. D

6.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7. 1. 13.

판결 선고 2017. 2. 3.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1001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로, 제6쪽 상단 표 내부 제6행의 "수탁자를"을 "수탁자는"으로, 제7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 [표] 위의 "각 등기가 경로되었다" 뒤에 "(다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공매개시 통보 이전에 경로되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 행의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6670)에서 위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갑 제9호증)의 내용은, 정상적인 분양계약과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체결 동기가 소외 회사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대주단 및 신탁사의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의 가.항 부분 마지막 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 뒤에서 보는 2013. 5.경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 D, B를 상대로 한 각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내용(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과 2013. 6.경 이루어진 원고의 대표이사인 L의 F와 피고 D에 대한 형사 고소의 내용(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의 가족들 명의로 허위 분양을 하여 빼돌렸다고 주장한 부동산으로 원고가 피고 D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등과 함께 피고 C이 취득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갑 제6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나 형사 고소 무렵에는 그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신청서가 2015. 9. 11.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 점에서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아시아신탁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2. 체결된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은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27. 선고 2004다5100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승

판사정동혁

판사이국현

별지